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9월 20일 02시 45분



목차

목차	2
공무원비리(감질피해)신고	3
운영목적	3
비회원글쓰기	3

운영목적

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갑질(괴롭힘)피해 신고대상
 - ▷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, 향응제공 등을 강요·유도하는 행위
 - ▷ 고의적인 인·허가 처리지연·거부
 - ▷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 거부·고의적인 지연 처리
 - ▷ 욕설·폭언·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
 - ▷ 부당한 차별행위 등
- 성희롱 피해 신고대상
 - ▷ 신체적으로 접촉,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
 - ▷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·평가하는 행위
 - ▷ 시각적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
 - ▷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
- 신고방법
 - ▷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신고하며,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을 기재바랍니다
- 처리제외
 - ▷ 갑질(괴롭힘)·성희롱 피해와 관계없는 단순민원이나 불편사항
 - ▷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
 - ▷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 사항

※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, 민원처리법 제7조)

비회원글쓰기

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※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회원 실명인증 로그인을 한 후 해당 민원창구로 이동하여 "내가 신고한 글목록 보기"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신 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.

[신고하기](#)

[내가 신고한 글목록 보기](#)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